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단50042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정지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한국명 : D)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9,333,97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33,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3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25.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인 피고 B, C(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재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2분의1 이

상 처분 시 재단의 동의를 받음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보증금액 회수)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책임경영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제1호의 책임경영 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약정인이 신고한 주소로 재단이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라. 피고 회사는 2020. 3.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9. 16. E은행에 원금 70,000,000원, 이자 427,881원, 합계 70,427,881원을 대위변제하고, 2021. 9. 16. 1,093,910원을 회수하였는데, 2021. 9. 16.경 이후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7%이다.

마. 원고는 2021. 10. 21.경 피고 B, C에게 각 책임경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소명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C에게는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 구상금 69,333,971원(= 대위변제 원리금 70,427,881원 - 회수금 1,093,9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1. 9.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5. 12.까지 원고가 정한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 주장).
-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21. 10. 21.경 위 피고들의 신고된 주소지로 원고의 소명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 주장).

나.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 제1항의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의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를 위반한 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은 경영인으로 하여금 보증의뢰인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는 대신 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 감소로 부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부수의무는 원고가 위 피고들의 책임경영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할 경우 이에 대한 협력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의무인 책임경영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③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의 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위 피고들의 책임경영의무 이행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위 피고들이 위 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위 피고들이 원고의 조사행위를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등 피고의 행위를 책임경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부수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연대보증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거래형태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